

「(재)구미문화재단 출연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와 문화자치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민간 중심의 전문 문화예술 기관 설립을 통해, 시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(재)구미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, 사업비,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2024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,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출연 개요
 - 기관명칭: (재)구미문화재단
 - 설립근거: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)
「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조직/구성: 1센터 1국 4팀 27명
 - 소 재 지: 구미시 송정대로 120

- 출연예정액: 45억원(전액 시비)

○ 주요 사업

- 창작기반 활성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
 - 문화예술활동 창작·보급 지원, 문화매개인력 양성 사업
 -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, 문화예술교육·협력 사업
 - 생활문화 기반 조성 지원 및 활성화 사업
-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공간 운영
 - 지역문화 정책 개발, 지역문화정책 포럼 사업
 - 문화예술공간(영상미디어센터, 생활문화센터 등) 운영

○ 출연의 필요성

-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인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 사업 발굴 및 육성
- 구미시의 문화예술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·지속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건비, 운영비 등 지원 필요
- 구미시의 지역문화 역량 강화와 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지원 필요

4. 검토의견

○ 본 출연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연 가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의 창의성과

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운영체제를 통해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출범하는 (재)구미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함.
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문화재단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